



글로벌 합작사업에 대한 경쟁법적 접근

홍대식 교수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장) 2017.9.21.

• 공동행위의 위법성 심사 절차

- 공동행위 심사기준
 - 공동행위의 성격에 대한 분석(1단계)
 - 성격상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한 경우(경성 공동행위): 가격산출량의 결정제한 이나 시장고객의 할당 등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체적 시장상황에 대한 판단 없이 위법
 - 성격상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대효과를 함께 발생시킬 수 있는 경우(연성 공동행위): 공동생산, 공동 마케팅, 공동 연구개발, 공동구매 등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대 효과의 종합적 심사
 - 경성공동행위로 분류되는 유형이라도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경제적 통합과 합리적으로 연관되어 추진되고 효율성 증대 효과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외형 상 경성공동행위인 경제적 통합 관련 공동행위) 경제적 통합의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증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법성 여부 판단
 - 경쟁제한 효과 분석(2단계)
 - 효율성증대 효과 분석(3단계)
 -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증대 효과의 비교형량(4단계)

• 경제적 통합 관련 공동행위의 의미

- (효율성 증대 위한) 경제적 통합
 - 경제적 통합은 생산, 판매, 구매 또는 연구개발 등의 통합을 의미
 - 효율성 증대 요소: 참여 사업자들이 중요한 자본, 기술 또는 상호보완적인 자산 등을 결합
- 경제적 통합에 따른 제한
 -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 판매, 거래, 원자재의 구매, 기타 영업의 주요 부분을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제한: 이러한 제한만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연성 공동행위
 - 가격, 산출량, 고객 등에 대한 제한: 이러한 제한만을 별도로 볼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에 정한 경성 공동행위의 외형을 갖게 됨
- 경제적 통합에 따른 가격, 산출량, 고객 등에 대한 제한이 연성 공동행위로 평가되기 위한 요소
 - 효율성 증대를 위한 경제적 통합과 합리적으로 연관되어 추진될 것
 - 효율성 증대 효과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 가격, 산출량, 고객 등에 대한 단순한 조정 또는 합의와 구별될 것

- 경제적 통합 관련 공동행위와 합목적적 공동행위에 부수된 제한
 - 경제적 통합 관련 공동행위에 대한 특별 취급은 외국에서 발전된 합목적적 공동행위에 부수된 제한 법리(ancillary restraints doctrine)와 유사
 - 합목적적 공동행위에 부수된 제한 법리
 - 부수된 제한의 법리는 통상 조인트벤처의 경쟁제한행위(가격담합, 시장분할 등)가 조인트 벤처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핵심적 기업활동에 부수적인 것이라면 합리의 원칙을 적용하여 심사한다는 법리를 말함
 - 미국 FTC와 DOJ의 공동행위 가이드라인 (2010)
 - 효율성을 증대하는 경제적 활동의 통합에 참가하는 사업자가 통합에 합리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그의 친경쟁적인 편익을 달성하기 위해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다른 경우에는 당연위법으로 고려되는 유형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경쟁당국은 합리의 원칙에 따라 그 약정을 분석한다고 규정함 (Collaboration Guideline §3.2.)

- 경제적 통합 관련 공동행위와 합목적적 공동행위에 부수된 제한-계속
 - 계약적 제한을 포함하는 합의에 관한 EU 법원의 법리
 - Metropole television(General Court, 2001)
 - 유료방송 조인트벤처 설립 합의에 부수된 유통 및 판촉 제한 약정의 경우
 - 주된 사업활동의 실행에 직접적으로 연관되고 필요한 부수된 제한은 조약 제101조 제1항에 위반하지 않음. 많은 투자와 유료방송 시장 진입과 관련된 상업적 리스크가 고려됨
 - 일반적으로 주된 합의 그 자체에 경쟁제한 요소가 없으면, 정당한 상업적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합의를 가능하게 하는 데 필요한 제한 또는 정당한 상업적 활동에 부수된 제한의 경우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됨
 - EU 위원회의 조약 제101조 제3항 적용 가이드라인 (2004)
 - 유통 약정이나 조인트 벤처와 같이 주된 부분의 약정이 경쟁제한의 목적 또는 효과를 갖지 않는다면, 그 거래의 실행에 직접적으로 연관되고 필요한 제한 역시 제101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고, 이러한 연관된 제한은 부수된 제한이라고 규정 (Guidelines para 29)
 - 부수된 제한 개념의 적용은 필요성과 비례성 심사에 한정되고, 경쟁제한 효과와 경쟁촉진 효과의 비교형량과는 구별됨 (Guidelines para 30-31)

- 경제적 통합에 부수된 제한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주된 목적이 되는 행위의 존재: 효율성 증대를 위한 경제적 통합
 - 일반적으로 조인트벤처를 가리킴
 - 공정위의 심사기준에서는 참여 사업자들이 중요한 자본, 기술 또는 상호보완적인 자산 등을 결합하는 생산, 판매, 구매 또는 연구개발 등의 통합을 의미한다고 설명
 - 부수된 제한의 조건
 - 연관성(relatedness) 심사: 경제적 통합과 합리적으로 연관되어 추진될 것
 - 필요성(necessity) 심사: 경제적 통합의 효율성 증대 효과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경제적 통합 관련 공동행위로서의 글로벌 운송합작사업

- 운송산업의 특성과 글로벌 운송합작사업의 발전
 - 해상운송과 항공운송의 경우
 - 운송 노선 관련 네트워크 효과와 운송에 필요한 기반시설(항만, 공항) 접근의 중요성
 - 글로벌 네트워크 통합 전략으로서의 글로벌 합작사업의 발전
- 글로벌 운송합작사업의 효율성 증대 효과와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
 - 공급 측면
 - 증가된 밀집도를 통한 비용 절감과 수용능력 증가
 - 이중마진의 감소
 - 수요 측면/소비자 편익
 - 요금 결합성: 이른바 메탈 중립성(metal neutrality)의 달성
 - 일정표 개선
 - 소비자 경험의 연결성 증가
 - 단골 고객 우대 제도(Frequent flyer program, FFP)의 통합

경제적 통합 관련 공동행위로서의 글로벌 운송합작사업

- 글로벌 운송합작사업에 대한 공정거래법 쟁점
 - 적용법조의 문제
 - 주된 사업활동에 초점을 맞출 경우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7호(조인트벤처) 적용
 - 부수된 제한에 초점을 맞출 경우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 3, 4호(가격, 무량 제한, 시장분할) 적용
 - 관련시장 획정과 경쟁 영향 평가 방식의 문제
 - 노선별 개별시장 획정과 노선별 시장 내의 경쟁상 제약에 국한된 평가
 - 노선별로 개별시장을 획정하더라도 협력 네트워크 간 경쟁 상황 고려
 - 직항 노선과 경유 노선 간의 대체관계
 - 주된 사업활동의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대 효과의 비교형량 문제
 - 비교형량 단계의 문제: 경쟁제한성 판단 단계 또는 부당성 판단 단계
 - 효율성 증대 효과의 성격: 관련시장에 특유한 효율성인가, 관련시장 외적인(out-of-market) 효율성인가. 후자인 경우 당해 공동행위로 인한 효율성인가(경쟁제한성 판단 단계), 경제전반의 효율성인가
 - 주된 사업활동이 경쟁제한적이지 않은 것으로 평가될 경우 부수된 제한의 취급 문제
 - 부수된 제한으로서의 성격만을 볼 것인가, 경쟁제한성 평가를 별도로 할 것인가

감사합니다.